

## 최근 소(한우, 젓소)에서의 환경분쟁(소음·진동·먼지 등), 법원소송사례 및 대처방안



류 일 선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수의연구관

최근 국내의 각종 공사장 부근에서 일어나는 가축에 대한 환경분쟁(소음, 진동, 먼지 등)피해를 호소하는 축산 농가들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으나, 피해 보상을 해결함에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환경분쟁을 해결하는 기관으로는 환경부 산하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와 지방의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운영되고 있으나, 보상에 따른 시일이 많이 걸리고 보상액에 불만족하는 사례가 많아 법원에의 소송을 제기하는 농가가 부쩍 늘고 있다.

처음부터 소송으로 가는 축산농가들은 대부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거나, 공사장 측과 행정기관의 불성실한 자세 등으로 인해 불만을 가지는 분들이 많다.

아직도 환경분쟁에 따른 피해보상 절차나 방법을 몰라 당황하는 축산농가가 많으며, 각종 공사장

의 시행처나 시공사측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불만을 호소하지만 안타까운 현상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 마음이 미어진 경우가 적지 않았음을 고백한다.

무엇보다도 축산농가가 준비해야할 것은 농가의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증거, 사진 등)가 부족함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여간 어려웠던 적이 한, 두번이 아님에 많은 아쉬움을 가졌다.

각종 공사로 인해 가축 사육 장소인 목장(농장) 내 도로개설 및 관통으로 인한 목장의 지속여부, 겨울철 수렵시기에 총성으로 인한 한우 성장지연, 육질 저하 등에 미치는 영향, 태양광 발전소가 축사 인근에 있어 사육 한우가 성장지연 등의 피해를 호소하는 농가가 있으며, 이에 따른 보상 선례도 있으므로 관련 전문가들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다.

따라서 필자는 환경분쟁사건을 현지조사 내지는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아직도 우리 축사농가들에게 최근 환경분쟁에 따른 통계자료, 사례 및 법원에 소송 제기된 사례들을 소개하여 도움을 주고 싶다.

## 1. 소음 등으로 인한 가축의 피해 형태 및 특성

### 가. 가축화(축종별), 품종별 소음피해의 형태와 특성

일반적으로 동물은 가축화 정도에 비례하여 주위 환경에 적응도가 높아지며, 야생성이 강할수록 외부 환경스트레스에 노출 기회가 적은 이유로 적응력이 떨어져 소음 등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축사 내 우리와 부딪힘, 유·조·사산, 압사, 급사 등 갑작스런 사고의 빈도가 높아진다.

동일 수준의 소음도에 노출될 경우에, 가축에 따라서도 젖소나 한우, 흑염소(사슴, 곰 등, 육계<산란계, 닭<오리, 오리<메추리 등이 예민하게 반응을 나타낸다.

### 나. 연령, 수태여부 등

가축은 연령이나 산차가 증가할수록 환경적응도가 높아지며, 임신중일 경우는 외부 환경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으로 부신피질호르몬의 갑작스런 증가로 프로스타그란딘(prostaglandin)의 분비되어 유·조·사산의 발생과 아울러 속발적으로 후산정체, 유방염, 각종 대사성질환의 발생이 많아진다.

### 다. 사양관리 정도

가축을 방목하거나 운동장, 축사 내 우리의 두당 사육면적이 넓은 경우에는 피해율이 감소하나, 좁은 면적에 밀사할 경우에는 압사, 부딪힘 등이 증가하여 피해율이 증가한다.

축사의 구조나 환기, 우상의 형태, 깔짚상태(건조, 미끄러움 등), 관리인의 전문성, 경력이나 사육관리정도 등도 현장 조사시 필수적인 검토와 분석이 요구된다.

## 라. 영양상태

사육중인 가축의 영양양부가 피해수준에 영향을 줄 수가 있으며, 사료급여 체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필요가 있다.

## 마. 사육규모

일반적으로 가축피해현장에 조사하러 가보면, 공사 이전의 사육두수를 파악하기란 여간 쉽지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특히 농가가 기록한 것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읍·면·동장 발행의 가축자가사육사실확인원(서)를 요구하게 되는데, 여의치 않을 경우 사료거래내역서(사료판매대리점 발행), 젖소검정기록, 정액(난자)증명서 및 인공수정증명서, 한우개량단지의 경우 혈통등록우 관리카드, OO축산업협동조합 발행의 우유생산 및 집유내역, 평균지방율, 세균수 및 체세포수 등급내역, 체세포수 관리 통지서나 임상전문수의사의 번식검진내역, 번식성적관리 등으로 추정할 수가 있다.

## 2. 가축에 대한 피해 평가 기준

소음 진동 수준에 따른 가축의 피해유발 정도는 지반, 지질상태, 입지여건, 평시 생활소음 진동도, 축종, 사양관리 형태, 축군 및 개체별 건강상태, 소음 진동 반복주기, 노출시간, 주야간, 조석별, 기상상태, 피해유발물체의 가시여부 등에 따라 현저한 차이가 있다.

또한 소음진동이 동시 발생되었을 때에는 개별요인의 경우보다 피해가 증가되며, 야간작업시 강한 조명등이나 차량 전조등 등의 영향과 병행될 경우에는 피해가 가중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가축피해 산정식에서 언급한 피해에 해당하는 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가축들이 심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생리적인 변화와 상품가치 하락으로 인한 피해 발생시 최근 증거자료 등을 분석하여 그 피해

(단위:건수)

구분	접수현황			처리현황				자진철회	처리중 (이월)
	계	접수	전년이월	계	재정(裁定)	조정(調停)	중재합의		
합계	-	2,647	-	2,242	1,287	49	906	308	97
'09	416	242	174	283	230	7	46	36	97
'08	391	301	90	209	149	-	60	8	174
'07	275	196	79	172	126	3	43	13	(90)
'06	276	202	74	165	83	2	80	32	(79)
'05	266	166	100	174	100	4	70	18	(74)
'04	372	195	177	223	101	1	121	49	(100)
'03	550	350	200	292	87	-	205	81	(177)
'02	493	440	53	263	118	2	143	30	(200)
'01	184	154	30	121	68	7	46	10	(53)
'00	100	70	30	60	39	3	18	10	(30)
'99	119	82	37	79	35	1	43	10	(30)
'98이전	249	249		201	151	19	31	11	(37)

가 인정되고 있으나, 아래의 공식이나 사례를 응용하는 것이 좋다.

**가. 가축이 생산하는 상품(닭-계란, 젖소, 염소 등)**

(소음·진동 발생 전·후의 등급차이에 따른 차액)×(등급이 회복되는 기간 동안의 총 생산량)

**나. 가축의 육질(한우, 돼지, 닭-육계 등)**

(소음·진동 발생 전·후의 육질 등급차이에 따른 단위 무게 당 차액)×(두수 당 생산량)×두수

**다. 기타 축종의 피해 산정기준**

타조, 오리의 경우 닭, 토끼의 경우 최근 산정기준에 준하여 산정한다.

**3. 환경분쟁 조정현황**

(2009. 12. 31 현재)

**가. 총 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설립된 '91. 7. 19 ~ '09. 12. 30까지 총 2,647건을 접수하여 2,242건을 처리(재정, 조정, 중재합의)하였으며, 308건은 자진철회로 종결되었고, 97건은 현재 처리중이다.

**나. 피해원인**

처리된 2,242건 중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 1,922건(86%), 대기오염 152건(7%), 수질오염 66건(3%), 해양오염 9건(0%), 기타 93건(4%)이었다.



※ 기타는 토양오염 3, 추락위험 1, 기름유출 3, 생태계 1, 일조권59, 입지선정2, 통풍방해·조망8, 해충6, 실내공기1 (단위:건수, %)

구분	계	소음·진동	대기오염	수질오염	해양오염	기타*
합계	2,242 (100)	1,922 (86)	152 (7)	66 (3)	9 (-)	93 (4)
'09	283	241	13	2	-	27
'08	209	173	8	3	-	25
'07	172	142	7	3	-	20
'06	165	150	8	3	-	4
'05	174	151	11	5	-	7
'04	223	206	8	3	1	5
'03	292	264	19	8	-	1
'02	263	229	26	4	-	4
'01	121	103	11	7	-	-
'00	60	49	7	4	-	-
'99	79	67	8	4	-	-
'98이전	201	147	26	20	8	-

#### 다. 피해내용

처리된 2,242건 중 정신적 피해가 888건(40%)으로 가장 많고, 건축물 피해와 정신적 피해를 함께 신

청한 사건이 526건(23%), 축산물 피해 286건(13%), 농작물 피해 138건(6%), 건축물 피해 72건(3%), 수산물 피해 58건(3%), 기타 274(12%)건이었다.

※ 기타는 영업손실, 지하수 오염, 방음시설, 이주비 요구 등임

(단위:건수, %)

구분	계	정신적 피해	건축물 + 정신적	축산물 피해	농작물 피해	건축물 피해	내륙 수산물 피해	해양 수산물 피해	기타 피해
계 (%)	2,242 (100)	888 (40)	526 (23)	286 (13)	138 (6)	72 (3)	47 (2)	11 (1)	274 (12)
'09	283	127	55	20	16	9	4	1	51
'08	209	71	57	19	18	4	5	-	35
'07	172	45	54	17	18	3	1	-	34
'06	165	74	40	20	6	3	2	-	20
'05	174	72	40	22	10	1	4	-	25
'04	223	107	49	33	9	1	1	1	22
'03	292	149	58	18	9	12	5	-	41
'02	263	121	65	42	13	7	1	-	14
'01	121	36	33	26	8	2	5	-	11
'00	60	16	13	15	4	2	5	-	5
'99	79	19	22	23	6	4	2	-	3
'98이전	201	51	40	31	21	24	12	9	13

(단위:건수, %)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	2,242 (100)	558 (25)	130 (6)	26 (1)	128 (6)	22 (1)	37 (2)	49 (2)	513 (23)	79 (4)	80 (3)	89 (4)	96 (4)	127 (6)	146 (6)	155 (7)	-
'09	283	79	10	3	16	2	2	5	71	9	14	7	9	18	16	22	-
'08	209	37	9	5	5	1	1	2	54	8	5	12	8	6	16	40	-
'07	172	25	15	1	12	6	1	3	25	11	2	7	12	13	17	22	-
'06	165	34	14	3	17	1	2	3	40	4	4	2	8	8	16	9	-
'05	174	34	20	2	9	1	1	1	39	4	6	9	7	13	11	16	1
'04	223	59	19	1	4	2	4	6	59	7	2	5	4	21	16	13	1
'03	292	94	23	5	16	4	8	5	59	10	7	6	14	12	15	11	3
'02	263	57	6	2	15	3	5	21	59	9	18	12	15	11	19	10	1
'01	121	33	4	-	6	1	5	3	27	3	7	5	6	9	11	1	-
'00	60	14	-	1	3	-	2	-	18	5	1	3	-	5	5	3	-
'99	79	27	1	-	13	1	2	-	17	1	4	8	1	1	1	1	1
'9801전	201	65	9	3	12	-	4	-	45	8	10	13	12	10	3	7	-

**라. 발생지역**

처리된 2,242건 중 서울 558건(25%), 경기 513건(23%), 인천 128건(6%) 등 수도권에서 발생한 분쟁이 1,199건으로 53%를 차지하고, 나머지 시·도

에서 1,043건으로 47%를 차지하고 있다.

**마. 처리기간**

처리된 2,242건 중 3개월 이내에 처리한 사건이

(단위:건수, 개월, %)

구분	처리 건수	평균처리 기간	기간 별 처리 건수									
			1월미만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이상
계 (%)	2,242 (100)	5.5	83 (4)	122 (5)	240 (11)	288 (13)	374 (17)	358 (16)	282 (13)	225 (9)	178 (8)	92 (4)
'09	283	5.5	5	18	15	25	38	62	48	42	27	3
'08	209	5.0	9	7	24	36	55	40	24	6	3	5
'07	172	5.2	1	11	7	31	54	39	18	7	1	3
'06	165	5.6	5	5	9	20	39	34	29	14	8	2
'05	174	6.4	3	4	6	10	25	38	37	26	19	6
'04	223	7.3	14	1	5	9	14	13	32	39	66	30
'03	292	6.5	10	8	10	9	31	59	60	63	33	9
'02	263	3.1	17	39	86	69	45	7	-	-	-	-
'01	121	3.5	10	13	27	33	15	9	6	5	1	2
'00	60	4.7	3	4	11	8	9	7	5	6	4	3
'99	79	5.4	1	3	8	14	14	16	9	6	5	3
'9801전	201	5.7	5	9	32	24	35	34	14	11	11	26

(단위:건수, 개월, %)

구분	처리 건수	재정(裁定)사건					조정(調停)사건			
		계	재정회의			중재 합의	계	조정 성립	조정 중단	기각
			배상결정	기각	방음대책등					
합계 (%)	2,242	2,193 (100)	1,031 (47)	243 (11)	13 (1)	906 (41)	49 (100)	21 (42)	26 (54)	2 (4)
'09	283	276	169	59	2	46	7	4	3	-
'08	209	209	127	21	1	60	-	-	-	-
'07	172	169	107	18	1	43	3	3	-	-
'06	165	163	62	20	1	80	2	-	2	-
'05	174	170	74	24	2	70	4	1	3	-
'04	223	222	80	19	2	121	1	-	1	-
'03	292	292	66	19	2	205	-	-	-	-
'02	263	261	105	12	1	143	2	1	1	-
'01	121	114	59	8	1	46	7	3	4	-
'00	60	57	32	7	-	18	3	2	1	-
'99	79	78	32	3	-	43	1	1	-	-
'98이전	201	182	118	33	-	31	19	6	11	2

445건(20%), 4~6개월 1,013건(46%), 7~9개월 682건(30%), 10개월 이상 92건(4%) 등으로 평균 처리기간은 5.5개월이 소요되었다.

### 바. 처리형태

처리된 2,242건 중 재정사건은 2,194건이며, 이중 배상결정은 1,031건(47%), 기각 243건(11%), 방음대책 등 13건(1%), 중재합의 906건(41%)이며, 조정사건은 48건으로 이중 조정성립 21건(42%), 조정중단 26건(54%), 기각 2건(4%)이었다.

### 사. 배상 결정을

처리된 2,242건 중 배상결정 현황은 우측 표와 같다.

배상 결정한 1,031건의 신청금액은 429,560,345천원, 배상 결정액은 40,603,392천원으로 배상율은 9.5%이었다.

(단위:건수, %)

조정(調停)현황	조정(調停)현황	조정(調停)현황	조정(調停)현황
합계 (%)	합계 (%)	합계 (%)	합계 (%)



(단위:건수, 천원, %)

구분	배상결정 건수	신청금액(A)	배상결정액(B)	배상율(B/A)
계	1,031	429,560,345	40,603,392	9.5
'09	169	61,711,877	3,846,699	6.2
'08	127	41,360,289	5,180,930	12.5
'07	107	52,386,409	5,306,765	10.1
'06	62	29,794,319	1,577,988	5.3
'05	74	30,469,412	2,566,881	8.4
'04	80	28,267,030	2,645,041	9.4
'03	66	25,246,840	4,020,242	15.9
'02	105	40,737,955	4,250,725	10.4
'01	59	15,445,239	2,735,743	17.7
'00	32	11,500,719	899,000	7.8
'99	32	11,266,595	675,276	6.0
'98이전	118	81,373,611	6,898,102	8.5

**아. 합의율**

처리된 2,242건 중 효력이 확정된 2,242건의 내용을 보면, 1,882건(84%)은 합의, 360건(16%)은 조정 중단 또는 소송 제기하였다. (단위 : 건수, %)

'04년 ~ '06년까지 지난 3년동안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불복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기관 또는 업체 현황을 조사한 결과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공사, 구청 등이 일반 기업체보다 법원에 소송을 많이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2007. 9.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보도자료 인용).

**자. 최근 3년간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불복하여 법원에 소송내역**

(단위:건수, %)

구분	조정(調整) 현황	효 력 확 정			합의기간 미도래
		계	합의	미합의	
합계	2,242	2,242(100)	1,882(84)	360(16)	
'09	283	283	240	43	
'08	209	209	177	32	
'07	172	172	146	26	
'06	165	165	147	18	
'05	174	174	140	34	
'04	223	223	191	32	
'03	292	292	262	30	
'02	263	263	221	42	
'01	121	121	90	31	
'00	60	60	50	10	
'99	79	79	71	8	
'98이전	201	201	147	54	

'04년 ~ '06년까지 총 재정결정건수는 총 277건으로 이 가운데 결정에 불복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건수는 총 76건(27%)이며, '04년은 100건 중 30건(30%), '05년 96건 중 31건(32%), '06년 81건 중 15건(19%)이 소송 제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불복한 기관 또는 업체별로는 '04년 ~ '06년까지 총 76건 중 한국도로공사가 12건, 한국철도시설공단이 3건, 한국토지공사가 3건 순으로 소송 건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밖에 지자체별로는 인천 서구청 2건, 부산 영도구청 2건 등 총 22건, 지방국토관리청별로 서울청 2건, 익산청 2건 등 총 6건 등도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업체별로는 풍림산업이 4건, 롯데건설·현대건설이 각각 2건 등 총 64건으로 나타났다.

소송제기 사건의 피해 유형별로는 환경분쟁 신청사건의 대부분(86%)을 차지하는 건설공사 소음·진동 분쟁사건의 불복이 가장 많은 총 42건(건물공사장 22건, 도로공사장 17건, 기타 3건)으로 55%를 점하고 있으며 교통소음이 18건(24%)로 그 뒤를 잇고 있다. 다음으로 도로·철도교량의 일조 방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7건(12%), 공장 오염물질로 인한 피해 3건, 층간소음 2건, 해양오염 피해 1건, 기타 3건 순으로 나타났다.

구분	사건명 및 정신적피해	오염 유형	신청 인수	처리일	신청금액 (천원)	배상금액 (천원)	불복한 자	소송 내용	판결 일자	법원 결정
03-3-180	경기 포천군 도로공사장 소음·진동으로 인한 가축	도로 공사장	3	04/2/13	564,756	9,779	신청인	손해 배상	05/11/22	기각
03-3-240	서울 마포구 아파트 신축 공사장 소음·먼지로 인한 정신적피해	아파트 공사장	356	04/2/27	151,400	46,000	피신청인	채무 부존재	05/2/17	기각
03-3-212	충량구 주택공사장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정신적피해	건물 공사장	37	04/3/12	107,500	31,000	피신청인	채무 부존재	05/2/17	28,000
03-3-255	전남 영광군 도로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영업손실 및 정신적피해	도로 공사장	1	04/3/26	40,000	-	신청인	손해 배상	04/9/10	각하
03-3-164	경기 용인시 경부고속도로 소음·먼지로 인한 재산 및 정신적피해	도로 소음	520	04/4/9	260,000	34,132	피신청인	채무 부존재	04/6/9	기각
03-3-284	경기 파주시 아파트 공사장 소음·진동으로 인한 건물, 정신적피해	아파트 공사장	1094	04/5/14	3,394,594	122,000	피신청인	채무 부존재	05/8/24	기각
03-3-316	경기 의정부시 아파트공사장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정신적피해	아파트 공사장	776	04/5/14	617,600	92,826	피신청인	채무 부존재	04/7/13	78,902
03-3-324	경남 진해시 도로공사장 소음·진동으로 인한 건물 및 정신적피해	도로 공사장	69	04/7/9	227,580	27,782	피신청인	채무 부존재	05/7/1	27,782
03-3-332	경기 안양시 도로차량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피해	도로 소음	1	04/7/23	10,000	-	신청인	손해 배상	04/12/10	기각



불복 사유로는 공사장 소음의 경우 신청인은 배상금액이 적다고 판단했을 때, 피신청인은 배상금액이 과다하거나 배상책임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로 조사되었으며 교통소음의 경우, 기존의 도로·철도(선주자)변에 아파트가 나중에 건축(후주자) 되었음을 이유로 도로 관리자가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또한 도로교량의 일조방해로 인한 농작물 등의 피해에 대해서는 피신청인이 일조피해의 배상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법원의 최종판단을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04 ~ '06년 소송제기 76건 중 법원에서 판결이 끝난 사건은 44건이며, 이 가운데 37건은 위원회 결정을 인용(84%)한 것으로 나타나 위원회 결정의 실효성이 높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으며, 위원회 결정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7건에는 무변론이 4건, 법원에서 수용하지 않은 것은 3건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32건은 현재 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

#### 4. 환경분쟁 조정사례

##### 가. 제주도 비행기 소음 가축피해

'09.4.30일 ○○○○박물관 개관 행사를 위한 예행연습시 십여대의 전투기가 저공비행을 하였고, 이 과정에서 엄청난 소음이 발생하여 ○○목장에서 방목중인 마필 1두가 우측대퇴골 골절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이후 기립불능 쇠약 등의 증세를 보이다가 15일후 사망하였다.

또한, 돼지 사육농가에서는 모돈이 폐사하거나 유산하는 피해를 입었고, 한우사육농가도 유산의 피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말피해 30,000천원, 한우 피해 5,000천원, 돼지피해 32,800천원 등 총 67,800천원을 배상하여야 한다.

전투기 비행시 신청인 측사에 미치는 최고소음도가 82~112dB(A)로 「환경분쟁사건 배상액 산정기준(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2010.1)에서 제시

한 가축피해 발생가능성이 있는 소음도 60dB(A)을 훨씬 초과하고 있고, 전투기 소음에 의한 가축피해를 입었을 것이라는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의 전투기 소음으로 인한 가축피해의 개연성이 인정되어 피해기간은 '09.4.30~09.5.5(6일간)까지로 하며, 피해두수는 자마 골절 폐사 1두, 한우 유산 2두, 임신모돈 폐사 2두, 모돈 도태 2두, 임신 모돈 유산 2두를 인정한다. 전투기 소음으로 인한 피해액은 37,325,000원으로 하고 재정신청경비 111,970원을 합하여 총배상액은 37,436,970원으로 한다.

##### 나. 충주시 도로공사장 젖소피해

'08.10.3일부터 현재까지 고속도로 공사장의 굴삭기, 브레이커 등 고소음 장비사용에 따른 심한 소음과 스트레스로 젖소의 유량감소, 도태우 발생, 사산 및 난산, 무발정과 수태 불량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터널발파시에는 지렁이, 생쥐 등이 죽었고, 건물이 심하게 흔들렸으며, 젖소는 유방염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현장사무소와 피해 협상을 하였으나 시공사는 협상의 의지가 없어 281,197천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재정을 신청한 것이다. 발파 및 토공사시 신청인 측사에 미치는 소음도가 50~78dB(A)로 「환경분쟁사건 배상액 산정기준(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2010.1)에서 제시한 가축피해 발생가능성이 있는 소음도 60dB(A)을 초과하고 있고, 소음·진동에 의한 젖소피해를 입었을 것이라는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의 공사로 인한 젖소피해의 개연성이 인정된다.

피해기간은 '08.11.12~09.9.22(237일간)까지로 하며, 유사산 3두, 도태 4두 폐사 1두, 번식장애 48.25두, 유량감소 24.6두, 성장지연 15두를 인정하며, 정액구입비 등 기타 피해는 전문가가 판단에 따라 7.5%를 인정한다.

피해액은 유·사산 피해 1,425,000원, 도태 피해 9,250,000원, 폐사 피해 3,000,000원, 번식효율저하 피해 2,429,388원, 유량감소로 인한 피해 16,974,080원, 성장지연 피해 1,570,531원, 젖소 치료비 등 기타 피해 761,834원 등 35,410,830원으로 하고 재정신청경비 106,230원 합하여 총배상액은 35,517,060원으로 한다.

#### 다. 서초구 지하철 공사장 소음등으로 인한 가축피해

'07.5월부터 '08.3월까지 000목장 인근에서 신분당선 전철(강남~정자)공사의 소음·진동으로 인하여 사육하던 가축이 스트레스를 받아 성장지연 뿐만 아니라, 젖소의 유사·산(3두-경산우), 폐사(3두-경산우2, 초산우1), 번식장애(5두-젖소4, 한우1), 유량감소(9두) 등으로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축에 영향을 미치는 공사기간은 '07.5.14~'08.3.30까지로 하며 「환경피해평가방법 및 배상액 산정기준의 합리적 조정방안 연구(2008년)」에 의거 60dB(A)이상을 초과하고 있다.

또한, 피신청인이 제출한 월별 계측 결과 보고서 상에서도 발파소음도는 55~70dB(A)이고, 발파작업에 따른 진동도는 0.09~0.1cm/sec로 나타나 피해인정기준(0.02cm/sec)을 초과하고 있는 등 피해의 개연성이 있다는 전문가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의 공사로 인한 젖소 및 한우 피해의 개연성이 인정된다.

피해기간은 '07.5.14 ~ '08.3.30(300일간)까지로 하고, 후유장애기간은 30일로 하며, 젖소 유·사산우피해 356,410원, 젖소 폐사 1,924,000원, 젖소와 한우의 번식장애 피해는 553,440원, 유량감소 7,168,830원, 성장지연 피해 281,190원, 가축약품구입비 등은 전문가가 인정한 54,080원과 소음·진동 중복피해로 인한 피해 추가 10%를 총 피해액에 산정하여 11,405,850원으로 인정한다.

#### 라. 남원시 도로공사장 한우피해

'05.10월부터 '06.11월까지 피신청인 도로공사장의 암반발파와 교량 설치시의 브레이커 작업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으로 인하여 한우가 폐사, 유사산, 육질저하, 수태가 되지 않는 등의 피해를 입어 적절한 배상을 요구하였으나 수용되지 아니하여 다음과 같은 피해배상을 요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폐사 및 유산, 진료비, 인공수정, 육질저하, 유산손실, 사료비 등 제경비, 정신적 피해를 포함한 680,445,000원을 요구한 사건이다.

공사시 사용장비로 인한 신청인 측사에 미치는 평가 소음도가 59~62dB(A)로 『소음에 의한 가축피해 평가방안에 관한 연구(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2001)』에서 제시한 가축피해 발생 가능성이 있는 소음도 60dB(A)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피해의 개연성이 인정된다. 배상액은 가축 피해액 69,397,480원, 신청경비 208,190원 등 총 69,605,670원으로 한다.

#### 마. 경북 00군 도로공사장 소음, 진동으로 인한 젖소피해

'06.2월부터 피신청인 도로공사장에서 발생하는 공사장비 및 발파 소음·진동으로 젖소가 유산 및 폐사하고 우유생산량의 감소와 질병 횡수 증가로 인한 치료비가 지출되는 등의 피해를 입어 피신청인측에서 손해사정사를 통하여 피해액을 산정한 바 있으나, 우수품종의 젖소정액을 고가에 수입하여 생산한 개량된 젖소가 피해를 입었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배상금액이 사정되어야 하나 손해사정회사가 제시한 금액이 피해액보다 과소하게 산정되어 수용할 수 없다.

피해배상 요구내역은 유방염, 유산, 폐소, 치료비, 유량손실 및 수입정액사용 등으로 820,386천원이나 배상액은 가축 피해액 149,831,010원, 신청

경비 449,490원 등 총 150,280,500원으로 한다.

**바. 도로차량 소음으로 인한 가축 피해**

목장 앞 고속도로 교량을 통과하는 차량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하여 가축의 체중 감소와 출하시 등급률 하락 현상이 발생하여 피신청인에게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요구한 결과 교량에 방음벽이 설치되었음을 이유로 아무런 조치를 해주지 않는다면서 출하시 체중감소, 등급률 하락, 성장지연으로 인한 사료비, 약품비 등 재료를 피신청인을 상대로 총 175,000천원의 피해배상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청인의 목장은 고속도로가 개통되어 차량이 운행될 경우 도로 소음으로 인한 영향을 다소 받기 쉬운 지역으로 신청인 목장에서 소음을 측정한 결과 소음도가 55.9dB(A)로 나타났다. 그러나 피신청인의 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하여 한우 및 육우가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사. 충남 00시 아파트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농작물, 소 및 정신적 피해**

아파트 신축공사를 시작하면서부터 소음발생으로 가축이 폐사하고, 농지에 근접하여 외벽설치로 인한 일조방해, 야간점등, 먼지 등으로 농작물(오이, 배추)의 수확량 감소로 소득액이 감소되었으며, 통풍단절로 인한 농작물의 잦은 병해로 경작 포기, 무분별한 관정굴착 및 하천의 변형·매립·폐쇄로 인한 농업용수 고갈 등으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어 공사 초부터 공사로 인한 피해를 항의함에 피신청인측의 보상해주겠다는 구두언약만을 믿고 기다려왔으나 준공일이 가까워오자 피해 배상을 외면하고 있는 실정으로 가축폐사, 농작물 소득 감소,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피해배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청인이 한우 폐사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수의사의 진단서나 폐사검안서를 제시하지 못

하고 폐사한 송아지 2두에 대하여는 인접하여 시공 중인 국도 제00호선 00천 0교공사 시공사와 합의 하여 합의금을 수령한 점과 전문가가 피신청인 공사장의 소음·진동으로 인한 한우 피해의 개연성을 인정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볼 때 한우 피해의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아. 전북 00군 도로공사장 소음, 진동으로 인한 한우 피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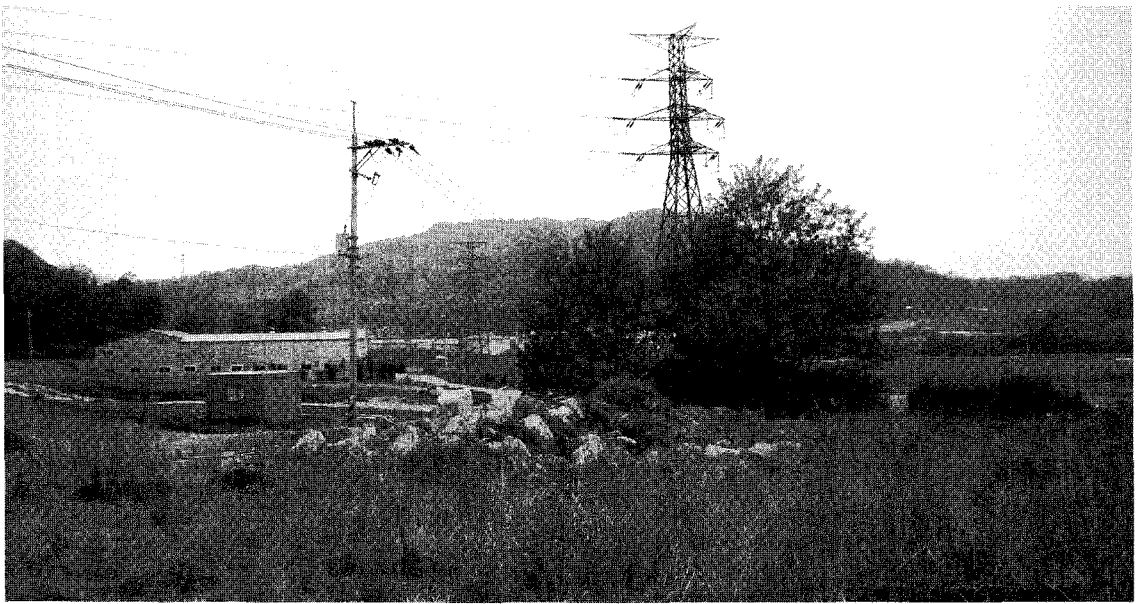
전북 00군 00면 00리에서 한우를 사육하는 000이 인근 도로공사장의 발파 및 사용장비의 소음 진동으로 인하여 한우 발파공사시에는 시험발파시와는 달리 소음도가 78.2~86dB이었고 이로 인하여 7.7~11.15 사이에 한우 10마리가 유산 및 폐사하였다.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시행사 000000, 시공사 0000(주), 하도급사 0000(주)를 상대로 194,634,881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사건이다.

피신청인의 공사장 소음·진동으로 인한 한우의 유산(4두), 폐사(8두), 번식효율 저하(10%) 피해의 개연성을 인정하고, 피해기간은 신청인의 한우 피해의 개연성이 인정되는 '05.7.5~'06.2.17로 하며 후유장애기간은 30일로 하여 피해배상한다.

배상액은 피신청인 000000, 0000(주), 0000(주)가 부진정연대하여 신청인 000에게 배상하여야할 금액은 한우피해 배상금 47,902,100원에 수수료 143,700원을 합한 금액 48,045,800원으로 한다.

**자. 경남 00군 상수도전용댐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한우 피해**

한우를 사육 중인 신청인은 인접한 상수도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하여 한우에 유사산, 성장지연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시공사 및 시행사를 피신청인으로하여 5,370만원의 피해 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공사시 소음으로 인한 한우의 유사산, 성장지연등의 피해를 인정하여



14,804,280원의 배상을 결정한 사건이다

### 5. 가축피해보상에 따른 축산농가들의 대처방안

소음·진동 등으로 인한 가축 피해의 경우에는 소, 돼지, 닭, 사슴, 타조 등 축종별, 품종별 및 피해 양상의 소음도에 따른 유산을, 폐사율, 성장지연율 등을 산출한 전문가의 연구용역 결과를 그 인과관계의 입증자료로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본 전문가가 그간 수많은 환경분쟁현장에의 전문가로서 현지 조사한 결과, 다음의 사항을 축산농가들에게 당부하고 싶다.

- 공사장의 소음 등으로 인한 가축 피해시 관련 전문가와의 상담
- 피해시 사진촬영, 기록유지와 공사장 측에 피해 사실 고지
- 환경분쟁현장에의 소음·진동 등으로 인한 피해유발시 저감대책(예 : 가설 방음벽 등)을 요구
- 질병발생(유·조·사산 등), 폐사 및 도태시 진단서 등 발부, 보관
- 각종 전염병 검진 및 예방접종 실시 철저

- 평소 사육현황(두수, 분만 및 번식상황, 치료, 예방접종 등)을 주기적으로 기록하여 유지
- 피해사실을 공사장 측에 고지하였음에도 보상 의지가 없을 경우, 피해보상을 해달라는 억지주장을 하기보다는 보상관련기관 등에 보상을 신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
- 관련 전문가의 조사시 피해사실을 적극적으로 증언하고 증거자료를 제출
- 평소 약품 및 사료구입, 유대, 매매 및 인공수정 증명서 등 각종 증명서 보관 철저

이상과 같이 각종 공사장의 소음·진동으로 인한 가축피해에 따른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 언급했는데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농가들 스스로가 이러한 피해 속에 적절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각종 질병발생과 번식기록을 정확하게 실시해야 하고, 유·사산 등의 질병발생이나 폐사 등의 경우는 동물병원원장의 진단서 등을 발부받아 철저히 보관하도록 한다. ㊦